

신탁사업4본부 팀원 김진환 / 02-6362-1083 / jinhwan.kim@daishin.com

문서번호 : 신탁사업4본부-21-00169

시행일 : 2021-02-09

수신 : 경기동부보훈지청,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국방부 국군복지단
참조 : 주식회사 빌드라잇양지, 동문건설 주식회사
제목 : 용인 양지 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변경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2월 15일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이었던 용인 양지 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 주상복합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2월 25일로 입주자모집공고가 변경되었기에 수정된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각 기관에 서는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을 2021년 3월 3일(수)까지 회산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가격, 평면 등 자세한 주택분양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등 기간까지 대상자 명단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 공급으로 전환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안내문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공급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신처 : ibdtax@naver.com

Tel : 02-2038-3602 / Fax : 02-2038-3603

첨부 : 1.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수정사항 공문 발송 협조요청문 1부.
2.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문 1부.
3. 해당 추천기관 리스트 1부.
4.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배정분 리스트 1부. 끝.

첨부파일:첨부1.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수정사항 공문 발송을 위한 협조공문_대신(200209).pdf,첨부2. 기관추천특별공급안내문(안)-용인 양지 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pdf,첨부3. 해당 추천기관 리스트.pdf,첨부4.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배정분 리스트.pdf

대신자산신탁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철종



※ "직인생략"된 문서는 대신금융그룹 내 수신 문서 확인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용인 양지 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 7
- 공급규모 및 내역 : 총 175세대(일반분양 103세대) [지하5층 ~ 지상29층 아파트 1개동 및 근린생활상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전용 85㎡ 이하 주택건설량 10% 이내, 15세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 7 일원 용인 양지 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 주상복합 아파트 신규 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배정하오니, 각 기관 별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2021년 03월 03일(수) 오전 중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계획(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2.25.(목)	
특별공급 신청일	2021.03.09.(화)	
당첨자 발표일	2021.03.17.(수)	
서류제출일	2021.03.18.(목)~ 2021.03.22.(화)	10:00 ~ 16:00
계약체결일	2021.03.27.(토) ~ 2021.03.30.(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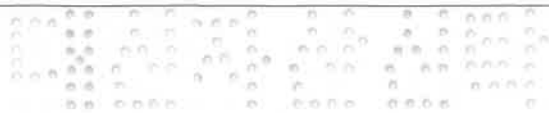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공급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 및 발표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추천기관

대상자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경기동부보훈지청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기동부보훈지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입주자저축 요건 :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하며, 제36조 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1순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청약예금 :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고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구분 (전용면적 기준)	거주지역		
	용인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85㎡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102㎡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135㎡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또는 그 세대원(배우자를 포함하며,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각각 신청 또는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후 동시에 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여부 판단 대상자의 주택소유 여부에 의거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와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본다.(1회 특별공급 간주)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기관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구분	59A	59B	59C	59D	계
국가유공자	2	1	-	-	3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	-	3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2	-	1	-	3
장애인(해당 지자체별 1세대씩 배정)	2	-	-	1	3
중소기업 근로자	1	-	1	1	3
합 계	9	2	2	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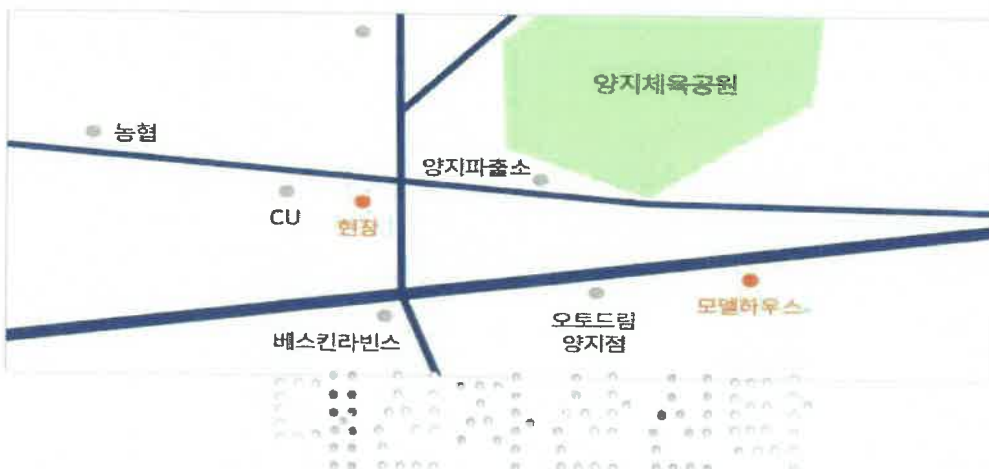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분양문의 및 모델하우스 위치

- 모델하우스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84-1
- 현장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 7
- 대표전화 : 1544-1991
- 홈페이지 : <http://www.yangji-dmapt.co.kr>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목록

대상자	추천기관
국가유공자	경기동부보훈지청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기동부보훈지청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국복지단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배정분 목록 및 배정표

장애인 배정분 추천 기관	타입 및 배정세대수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59A / 1세대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59A / 1세대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59D / 1세대



※ 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스토어에서 "정약 HOME"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청 건축과-000000호(2021.00.0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74-3외 3필지

■ 공급규모 : 총 175세대(지하 5층, 지상28층 1개동. 29층은 고가저주조 설치) 공급

[일반공급 105세대, 특별공급 70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5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5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35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5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3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내진설계 등급 :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표기(내진능력 : 최대지반가속도(g)=#### 내진능력(MMI등급) : ##)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 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0000000000	01	059.4176	59A	59.4176	23.2836	82.7012	47.1867	129.8879	13.0459	100	9	9	20	2	40	60	4	
		02	059.5838	59B	59.5838	24.1651	83.7489	47.3186	131.0675	13.0824	25	2	2	5	1	10	15	1	
		03	059.5877	59C	59.5877	23.2633	82.8510	47.3218	130.1728	13.0833	25	2	2	5	1	10	15	1	
		04	059.3498	59D	59.3498	23.6719	83.0217	47.1327	130.1544	13.0310	25	2	2	5	1	10	15	1	
합 계												175	15	15	35	5	70	105	7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란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통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 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 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세대별 대지비율은 전체 대지면적을 공급면적(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배분 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계약 시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기로 함(단, 소수점 이하 변경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